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0. . .	
연월일	(제 회)	

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명래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의견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환경영향평가법」이 개정(법률 제16617호, 2019.11.26. 공포, 2020.5.27. 시행)됨에 따라,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기관을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, 국립생물자원관,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으로 확대하고,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규제심사 전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까지”를 “제5항까지”로 한다.

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국립환경과학원

2. 「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

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

4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환경환경공단

5. 「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생태원

제4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까지”를 “제6항까지”로 한다.

②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제23조

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제55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

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4조(부정행위의 기준)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”는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제15조를 준용한다.

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0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에 따른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를 <u>절차를 거치지 않거나</u> 절차가 끝나기 전(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	법 제76조제2항 제1호	1,000	1,500	2,000

<u>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</u>)에 공사를 한 경우 나.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다.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라.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마.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바.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.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·준공·중지 <u>또는 재개</u>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아.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.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.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<u>타.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(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</u>	법 제76조제4항 제1호	200	300	500
	법 제76조제4항 제2호	200	300	500
	법 제76조제3항 제1호	500	700	1,000
	법 제76조제4항 제3호	200	300	500
	법 제76조제3항 제2호	500	700	1,000
	법 제76조제4항 제4호	200	300	500
	법 제76조제4항 제5호	200	300	500
	법 제76조제1항 제1호	2,000	3,500	5,000
	법 제76조제1항 제2호	2,000	3,500	5,000
	법 제76조제1항 제3호	2,000	3,500	5,000
	<u>법 제76조제4항 제6호</u>	<u>200</u>	<u>300</u>	<u>500</u>

<u>협의를 절차가 끝나기 전에 말한다)에</u> <u>공사를 한 경우</u>				
파.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(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)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3항 제2호의2	500	700	1,000
하.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나 사업자(사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	법 제76조제3항 제3호	500	700	1,000
거. 법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·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3항 제4호	500	700	1,000
너.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76조제4항 제8호	200	300	500
더. 법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·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4항 제8호의2	200	300	500
러.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4항 제9호	200	300	500
머. 법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교육·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5항 제1호	100	200	300
버. 법 제6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	법 제76조제5항 제2호	100	200	300

서. 법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5항 제3호	100	200	300
어.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76조제3항 제5호	500	700	1,0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·보완·반려 등) ① (생략)	제23조(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·보완·반려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	1. 국립환경과학원
	2. 「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
	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
	4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환경환경공단
	5. 「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생태원
② ~ ④ (생략)	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·반려	⑥ -----제5항까지----- ----- -----

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제48조(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) ① (생략)

<신설>

② ~ ⑤ (생략)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·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제55조의3(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간) 법 제36조 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(생략)

2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·운영하는 생물자원관

3. ~ 5. (생략)

-----.

제48조(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법 제28조제2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③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
⑦ -----제6항까지-----

-----.

제55조의3(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간)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74조(부정행위의 기준) 법 제63

조의2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부정행위”는 「국가기술
자격법 시행규칙」 제15조를 준
용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281